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이광희 · 민병덕  
양부남 · 이수진 · 김현정  
한준호 · 박균택 · 전현희  
염태영 · 전용기 · 김우영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.

그런데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의 경비 등 지방의회와 관련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42조의2 신설).



#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2조의2(지방의회의 경비) ① 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 관련 경비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운영위원회(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)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. 다만,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 제출기일(이하 이 조에서 “예산안 제출기일”이라 한다)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가 지방의회소관 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접 지방의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지

방의회의 의장에게 송부한다.

⑤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을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   정      안
<p><u>&lt;신    설&gt;</u></p>	<p><u>제142조의2(지방의회의 경비) ①</u>  <u>지방의회 소속 사무기구 관련</u>  <u>경비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경</u>  <u>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</u>  <u>예산에 이를 계상한다.</u></p> <p><u>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</u>  <u>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</u>  <u>여 해당 지방의회의 운영위원</u>  <u>회(운영위원회가 없는 경우</u>  <u>는 본회의)의 심사를 거쳐 지</u>  <u>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.</u>  <u>다만, 제142조제1항에서 정한</u>  <u>예산안 제출기일(이하 이 조에</u>  <u>서 “예산안 제출기일”이라 한</u>  <u>다)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</u>  <u>또는 본회의가 지방의회 소관</u>  <u>예산요구서의 심사를 마치지</u>  <u>못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</u>  <u>장은 직접 지방의회소관 예산</u>  <u>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 <u>에게 제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</u>  <u>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</u></p>

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감액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예산안 제출기일 15일 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송부한다.

⑤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가 있을 때에는 그 감액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예산안 제출기일 7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한다.